

제320회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0월7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1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4. 2013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 | |
|-------------------------------------|----|
| 1. 2012회계연도 결산(계속) | 1 |
| 가. 고용노동부 | |
|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24 |
| 2.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4 |
| 3. 201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 24 |
| 4. 2013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25 |
| 1. 2012회계연도 결산(계속) | 35 |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노동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날이 좀 덥습니다. 창문 모두 열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까지 처리해야 할 안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간사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결산심사를 하는 도중에 두 분 간사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이 오늘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정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정당 간에 협의도 했을 터이니 바로 김성태 간사님과 홍영표 간사님께서 다시, 대부분 합의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또 협의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두 분 간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되 두 분 간사님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고용노동부

(14시22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0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사정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이 일을 통해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일할 기회 늘리기와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를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일할 기회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런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94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82.3%인 77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를 합쳐 당초 1조 7248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01억 원이 포함되어 총 1조 734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89.2%인 1조 5466억 원을 지출하였고 33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49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5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고용보험기금 8조 1347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7조 4796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5663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4336억 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169억 원 등 총 17조 311억 원을 조달 운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추진한 2012년도 핵심 고용노동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하기를 원하는 한 분이라도 더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열린 고용 확산을 통해 실력을 갖춘 청년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커 갈 수 있도록 하고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넓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 일 희망 일터 만들기'에도 적극 매진하

였습니다.

사업장 집중 감독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장시간 근로관행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 공생 프로그램 추진 등 안심일터 만들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노사가 나눔과 키움의 정신을 토대로 상생하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을 강화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선도하는 한편 기초 고용질서 위반에 대한 감독과 제재도 강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수노조와 근로시간면제 제도 안착과 노사의 사회적 책임 인식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량적인 고용이 개선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일자리 사정은 아직 어렵습니다.

일하고 싶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상심하는 분들, 열심히 일해도 잘살기 어려운 분들, 적합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로의 성숙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할 일자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고용률 70% 로드맵과 일자리 협약 체결 등 목표달성을 위한 초석을 구축하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이 일자리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 청년 등 눈높이에 맞춘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희망사다리 구축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 한편 산재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만들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산성 높은 일터, 취약 근로자를 배려하는 일터, 일자리를 더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산 정약용은 공직자의 가장 으뜸가는 임무를 절약으로 꼽았습니다.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내 것처럼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에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고 일자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보고에 앞서 지난 6월 국회 이후 새로 임명된 기관장과 산하 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소속 기관장 및 산하단체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결산 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계륜 예.

○이완영 위원 여기 회의 전에 말씀 들어 보면 아직 국정감사계획이 양 간사 간에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에 관해서도 참고인하고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회의 중에 두 간사님은 바로 좀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결산 회의 중에 마무리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간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기획실장님 보고

도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마 두 분이 협의를 하시러 곧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의 세부 보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좀 들어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홍영표 위원 예.

○한명숙 위원 잠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계륜 그 전예요?

○한명숙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예.

○한명숙 위원 지금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어서, 저희도 사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있는데 환노위가 아직까지도 증인 채택에 협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간사가 우리들한테 지금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요.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런 것도 방법이겠습니까마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충분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1차 협의를 해 본 다음에 또 중간에 약간 정회가 필요하면 정회를 하더라도 중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의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 다음에 필요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예,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오늘 안에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말씀해 보시고 안 되면 중간보고를 저희한테 좀 해 주시고, 저희도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의견을 받아서 또 조정이 필요하면 하실 수 있도록 타임스케줄을 좀 정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한 번 더 양당 간사 간에 협

의가 필요한 시점 같아 보이니까 우선 결산에 대한 보고를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되 아주 요약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보시면, 일단 먼저 전체 재원 규모를 말씀드리고 회계 결산, 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같음을 하겠습니다.

6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총재원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기금을 포함해서 총재원 규모는 21조 71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수준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18조 5777억 원으로서 이 중에 예산이 1조 5466억, 기금이 17조 311억 원으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 재원별 분포를 보면 산재보험기금이 46.2%, 고용보험이 38.9%, 일반회계 7.7% 등의 순입니다.

회계별로는 총 1조 7348억 중에 일반회계가 96.1%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외에 특별회계가 3.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구성은 총 19조 9753억 원 중에 산재보험이 10조 218억, 고용보험이 8조 4540억 원, 그리고 기타 등의 순입니다.

8쪽, 회계 결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보조금 정산 후에 반환금의 증가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증가에 기인합니다.

이 중에서 수납된 금액은 777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47억 원 정도 증가하였고, 수납률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나 과태료 시스템 개편 등 수납률 제고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5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조 7348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101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1조 5466억 원으로 현액 대비 89.2%를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억 원이고, 불용액은 1849억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쪽, 저희 다섯 가지 회계 중에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11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8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7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9억 증가, 수납률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주로 과태료, 이행강제금, 기타경상이전 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액은 5억 원, 또 미수납액은 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과태료 미수납,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입니다.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1조 6667억 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된 금액이 1조 4838억 원으로 예산 대비 89%를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 1조 4838억 원은 주로 고용정책사업, 그리고 능력개발사업에 약 70% 이상이 사용되었고요, 그 이외에 모성보호 지원, 노사협력, 취약근로자 지원, 산재보험 및 예방, 국제 관련 업무, 또 일반 기관운영비 이런 순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53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은 17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3억 원, 좀 큰 폭입니다. 그런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그 밑에 간단히 몇 개 설명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750억 원으로 가장 큼니다. 이외에 실업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이 436억, 또 취업성공패키지가 331억, 사회적기업 육성이 37억, 기타 또 여러 가지 불용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는 세부 전용, 이월 그리고

비용된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8쪽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을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3억 2100만 원이고요, 그중에 2600만 원이 수납되어 2억 9500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폐광 등 경영 악화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기타 연체료 등이 미수납의 주요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을 보시면 예산현액 470억 중에서 한 422억 정도가 지출되었고요, 47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주로 에너지회계는 진폐위로금이나 진폐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FTA 체결에 따라서 농어민을 대상으로 실업자 직업훈련비로 8억 62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경상이전 지출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은 제주고용센터, 그리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주요사업비 및 기관운영비로 한 105억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회계의 마지막으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예산현액 97억 5100만 원 중에 91억 7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고객상담센터 건립 관련한 지출입니다. 불용이 5억 7900인데 건설비 중 낙찰차액, 그리고 준공금 대금 정산차액 등이 불용 사유입니다.

22쪽의 기금 결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수입 결산을 보시면 저희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징수결정액이 총 20조 1907억 원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수납된 금액이 17조 311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102억 원 증가하였고 수납률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조 26억 원으로 고용, 산재, 임금채권 등의 순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570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지출 결산입니다.

소관 5개 기금의 총지출액이 17조 311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계획현액 대비 96.5% 정도가 지

출이 되었고요, 여유자금을 5조 5987억 원 운용을 하였습니다.

24쪽부터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조 9759억 원으로서 보험료가 7조 1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일반회계전입금이 또 172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외에 여유자금 회수 등의 내역입니다.

이 중에 수납된 금액이 8조 1347억 원으로 90.6%를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99억, 그리고 미수납액은 8313억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26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8조 4540억 원입니다. 이 중에 사업비는 현액 중에서 5조 9879억 원(95.1%)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052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2조 1468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비 지출액은 5조 9879억 원입니다. 이 중에 실업급여사업이 4조 3211억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업급여 중에서 또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3조 6767억, 그 이외에 모성보호가 6000억 정도, 또 반환금이 44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에 1조 568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정책이 3045억, 능력개발 분야가 991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고용평등 1531억, 장애인 업무에 13억 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고용노동행정 지원에도 98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이월액은 한 2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불용액은 3052억 원으로 실업급여, 고용안정·능력개발 이쪽에 각 사업별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2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조 6750억 원으로 보험료가 6조 325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여유자금 회수 등의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7조 4796억 원으로서 86.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40억, 그리고 미수납액은 1조 1814억 원 수준입니다.

3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지출계획 현액은 10조 281억 원으로서 이 중에 사업비가 현액 중 4조 7134억 원(98.8%)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9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유자금은 2조 7662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액 총액 중에서 산재보험사업이 4조 1298억입니다. 그중에 산재보험급여가 3조 8513억, 산재보험사업이 1689억 원입니다.

산재예방사업에는 2991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사고성 재해예방, 그리고 기타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의 불용액은 519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32쪽,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199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사업주 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경상이전수입이 1조 4378억 원이고요, 여유자금 및 공자기금 원금 회수가 1729억, 기타 수입이 한 92억 원 정도입니다.

수납액은 5663억 원으로서 35%로 좀 낮은 수준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297억 원, 미수납액은 9240억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출 내역은 계획현액이 6495억 원으로서 이 중에 사업비는 계획현액 중 2561억(90.1%)을 지출하였고요, 28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여유자금은 3102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액 중에서 해당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금액이 2323억, 무료법률구조지원이 98억, 반환금 지급액이 41억 원 수준입니다. 불용액은 281억 원 수준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264억 원으로서 부담금이 2505억 원으로 가장 크고 기타 용자금 회수, 가산금,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 회수 등의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4169억 원으로서 97.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억 원, 미수납액은 87억 원 수준입니다.

36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장애인기금의 지출계획 현액은 3981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그 현액 중에서 2689억 원(95.5%)을 지출하였고, 12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유

자금 운용 규모는 1480억 수준입니다.

사업비 지출액 총액 중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이 1281억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그 외에 표준사업장 지원, 능력개발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내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불용액은 127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기금 마지막 순서로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다. 3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935억 원 수준입니다. 자체수입이 2226억, 복권기금도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내부수입이 222억, 여유자금 회수가 2487억의 수준입니다.

수납액은 4336억 원으로서 수납률이 87.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6억, 미수납액은 총 573억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40쪽 가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4456억 원으로서 사업비는 계획현액 중에서 2061억(98.3%)을 지출하였고요, 12억 원이 이월되고 24억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유자금은 2275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액 중에서 퇴직연금사업 운영 등 근로자 복지지원이 54억, 또 근로자 생활안정과 관련된 비용이 438억이고요, 신용보증 대위변제가 171억, 공자기금 예수상환 1064억, IBRD 차관의 원리금 상환이 242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은 12억 원, 불용액은 24억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상 회계와 기금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1>은 각 회계별 신규사업과 종료사업 현황을 정리한 표입니다.

그리고 45쪽으로 가시면 <참고 2>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유자금이나 정부 내부의 전출금, 원금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총지출 규모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46쪽 이하는 저희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무결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2012회계연도 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먼저 총괄 부문으로 정책연구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고용노동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의 공개가 미흡하고, 일부 전문가가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편중 등의 문제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사업 중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 목표와 실적 산정이 부정적이고 목표달성률이 저조하며, 창출된 일자리의 질적 개선 필요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청년일자리 대책 수립 시 합리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청년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2쪽의 첫 단락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사업 시행 중에 자체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고용보험가입률과 고용유지율 등 고용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장애인고용공단과 법무공단의 경우 위탁사업비 중 인센티브 성격의 성공금을 최소화하는 등 위탁사업비 편성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의 단락의 한국잡월드 운영사업은 잡월드의 광고 유치 실적이 목표 대비 37%에 불과하므로 광고 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 지원사업은 본 사업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이 26.4%로 매우 낮으므로 참여 학생들의 구직조건과 선호도에 부합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고용평등실현사업 중에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사업은 99%가 넘는 집행률에 비해 여성고용률이 35%, 여성관리자 비율이 16.6%로 여전히 저조하고, 공공기관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므로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단락입니다.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중에 취약근로자 근로조건보호사업은 회계연도 중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 지연으로 예산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불용되고 근로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4쪽의 기금 결산입니다.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고용정책사업 중 고용촉진지원금은 집행이 저조하여 매년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유사사업과의 대상 중복 등 집행부진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취약계층이 종사하기에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는 등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방안을 강구하고, 급격히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청년·고령자 및 장애인 계층에 대하여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락의 청년취업진로 지원사업은 취업지원관의 신분을 안정화하여 그들이 대학에서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취업지원관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자영업자전직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이 국한되어 있고 유사 사업이 있어 집행이 저조하므로 사업을 재검토하여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불어 영세자영업자를 위하여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연령, 성별, 산업별 유형 등 특성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락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사업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기관의 성과가 낮고, 동일 직종 취업률이 하락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훈련기관 선정을 내실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고용평등실현사업 중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원 목표인원을 과다 추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지원 인원의 추이 및 지원 요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락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사

업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계획액의 90% 이상을 자체 변경을 통해 임의로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향후 이와 같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사업은 대기업 편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은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대기업 편중 문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형 제도의 부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중 안전보건 문화 정착사업은 민간기관의 재해예방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지원단체가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으므로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증진사업 중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경영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 마지막 쪽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채권보장사업 중 체당금조력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9.9%로 매우 저조하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력지원 대상을 넓히고 공인노무사 풀을 확대하며 공인노무사 지원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용자사업 역시 집행률이 4.3%로 실적이 부진한데 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체불임금 청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불임금 50% 선지급 요건을 삭제하고 용자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재직근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부산 남구을 서용교 위원님 질의합니다.

○서용교 위원 서용교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사업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청년인턴제라든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창출 지원사업 이런 대부분들, 일자리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대체로 집행률이 한 50% 미만 되고 실적이 좀 다른 타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 시기가 연말로 정해져 있거나 또 임대료라든지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 말고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정책사업에서 사업의 집행률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장관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그동안의 사업실적들을 분석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과거 2011년부터 계획돼서 넘어온 2012년 사업들을 분석해 보니까 만족하지 못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래 정책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추진 취지는 옳게 시작했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첫 번째로 그런 정책대상에 대한 수요분석이 좀 면밀하게 되지 못하고 일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앞서서 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이렇게 과도한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하나는 수요가 있더라도 실제로 국가재정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사업들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모럴 해저드라든지 또 도덕적 해이 같은 부정수급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요건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애초의 계획된 것보다도 현저하게 집행률이 낮아지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정책수혜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요건에 해

당할 경우에 기업이든 근로자든 거기에 모집을 하거나 지원을 해서 요건에 맞으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또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표를 보면, 금년도 41개 사업 중에 올해 2013년도의 신설 5개를 제외한 36개를 보면 86%가 작년도에도 불용사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 사업은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 또 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사업이 거든요. 계속 확대해야 되는 사업인데 집행률은 떨어지고 있고, 문제가 계속 중첩되고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용예산들을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막판에 밀어내기 식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어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고용노동부에서 각별히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장관께서 지금 예산집행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또 중간점검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 해 사업을 하고 나면 불용의 원인이란지 구조적 요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특별히 지금 우리 고용안정사업 관련해서 불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장관 취임하고 나서 불용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살펴봤더니 취지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정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의 수요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실제로 어떤 요건을 가져갔을 때 신청이나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들이 너무 느슨하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들은 조금 더 모니터링을 더 깊이 가까이 들여다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제가 이 부분부터 질문하는 취지는 결산심사 자료들을 보고 또 편성된 예산안 보니까 이게 크게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염려하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국정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할 때도 제가 다시 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장애인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취업지원사업하고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노동청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취업 교육을 일반 민간학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보면 취업지원활동 중에 교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문제들 때문에 실제 교육은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고용사업장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저희들이 전체 이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공단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별도의 특화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관을 참여시켜서 이 민간훈련기관에다 좀 집중해 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관련 직업훈련들, 취업 지원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올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달 체계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로 상호 경쟁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훈련기관이 그동안에 해 온 것들을 한번 다시 평가해 보고 그쪽에 조금 더 역량을 몰아 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반쪽만 답변을 하시는데요, 교육기관도 문제지만 그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우리 노동청이나 취업성공패키지하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그 기관의 복지 전달체계를 좀 합리화시키고 현실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한 군

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정확한 실태조사라든지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기관 문제는 그게 민간교육기관이 했던 공공이 했던 간에 관계없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시설들,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민간기관에 대해서 교육비만 지원하고 있지 실제로 그것이 효율적으로 교육이 수행될 수 있는 여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잘 안 되어진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 부분이 제대로 집행 안 되어지는 부분들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시다만 중소기업과 관련된 여러 조사들을 보면, 우리 젊은 청년층에서 중소기업 취업 기피 이유들을 보면 일단 첫째 임금이나 복지 문제, 그다음에 고용의 안정성 문제,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능력개발 기회 부족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청년층을 위해서 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 향상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소기업 자체가 능력 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이 수도권 이 61% 정도로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중소기업 수나 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 수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특별하게 어느 예를 들기는 좀 그런데 지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자 수가 9.9%이고 종사자 수가 9.6%인데 예산은 15.7%가 집행이 된다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울에 몰려 있는 것도 문제이고 지방에서도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간의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대행하는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승인기관이 총 53개 기관이 있는데 5개 기관이 거의 50% 미만 되는 숫자의 사업을 다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5개 기관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요, 지역에 오로지 천안에 하나가 있지요. 이런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실제 어디에 분포하는지,

이 정책의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좀 제대로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집행 내역을 보면 괴리현상이 너무 큼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지역 편차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지방 중소기업의 기업 비율하고 실제로 집행된 예산의 부분, 안 맞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시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달체계 문제도 있고 효율성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바텀업 방식으로 직업훈련 자체를 기업인력 수요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들이 지자체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수요를 개발하고 거기에 훈련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하고 또 거기서 나온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훈련 인원들을 거기에서 그 지자체 인적자원위원회가 필요한 지방의 기업에게 연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로 지금 우리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김경협 위원 질의합니다.

○**김경협 위원** 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아마 대책이 필요할 텐데, 그동안에 장관님께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제안들도 좀 하셨고 여기에 대한 소신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연금학회장도 역임을 하시면서 그때에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서 3층 연금체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를 통한 60~70% 정도의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맞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맞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 주장을 해 오셨는데, 퇴직연금 제도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도 지금 현재 400만 원 한도에서 800~1000만 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립적인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해 오셨는데,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맞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 소신에 아직 변함이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바라는 정책목표입니다마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퇴직연금·연금저축 일괄적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면서 혜택을 대폭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축소를 시킨 건데 이렇게 해서 축소를 시켜 놓으면 연봉 기준의 과세표준으로 보면 1200~4600만 원 사이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연봉자들은 평균 약 한 13만 2000원 정도가 추가 세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4600~8800만 원짜리는 52만 8000원의 추가 세 부담이 생기는데 일종의 환급이 줄어드는 거지요, 예전에 공제했던 부분에서. 그러면서 추가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현재 퇴직연금 자기부담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선하기 전에 사실은 소득 수준이 더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확대되는 구조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득공제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은 개선안보다는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구간 간의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저소득층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세제개편은 제가 전문적으로 평가를 할 그러한 위치나 전문성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준비할 때 그래도 각 부처의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 이런 안을 내놓을 때는 최소한 우리 근로자들의 문제, 그리고 여기 봉급생활자들의 문제에 있어서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다들 아주 굉장히 큰 관심사항이고?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수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정안을 냈는데 지금 현재 냈던 수정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연봉 5500만 원 이상만 추가부담이 생긴다 이런 주장이었던 말이에요, 처음에 발표할 때. 그런

데 이걸 가만히 봤더니 그러면 저임금층은 혜택이 커졌느냐,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게 아니고 과세표준 연 1200~4600만 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평균 13만 2000원의 세금 부담을 더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지금 계산을 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봉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 여기까지는 52만 8000원의 추가 세 부담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냐 하면 장관님이 아직까지 죽 주장을 해 왔던 3층 연금체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과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정반대로 간 게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안을 제안을 안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번에 세제는 시스템 차원에서 전체 우리 세제를 개편한 것이기는 하고요. 거기에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1200만 원 구간부터는 감소효과가 있습니다마는 1200만 원 이하 아주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제혜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김경협 위원** 그 이하는 원래 거의 면세점 아닌가요? 그건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닙니다. 실제로 1200만 원 소득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게 중소기업 같은 데서 특별히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안 되어 있어서 그쪽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김경협 위원** 과세표준액이 연간 1200만 원 정도, 이걸 뭐 사실 고임금제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연 4600만 원까지 사이. 그런데 여기에 세 부담이 13만 2000원이 늘어난다, 그리고 1200만 원 이하는 정말 실질적으로 면세점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문제는 그런 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 때 노동부가 적어도 근로자들의 세금이 지금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직까지 기존의 노동부의 방침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방침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얘기가냐 하면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발표하면 다른 부처는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계속 기재부 하는 대로만

따라갈 거냐, 이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기서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거지요.

결국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런 문제들
에 대해서, 지금 근로자들의 세부담 문제에 관련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은 내
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없음으로 인해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왜 봉급생
활자들의 유리지갑만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정말 진짜 고소득자의 명품지갑은 건드리지도 못
한 채 왜 이렇게 봉급생활자들에게만 세 부담을
계속 늘리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안은 지난 이명박 정부, MB정부 때보
다, MB정부 때 2012년에서 16년까지 짜 놓은 3
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있지요? 지금 이것보
다 더 후퇴한 안이에요. 이때 안이 퇴직연금 선
호를 위해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 개선안을 마
련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현재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궁급했던 게 노동부가 입장
이 바뀐 건지, 장관님이 아직까지 죽 주장해 왔
던 소신, 주장하고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
요. 그래서 나는 혹시 지금 소신이 바뀌었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소신이 바뀌지 않았습
니다.

○김경협 위원 안 바뀐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번에 전체 세제 자
체 시스템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개 항목에 대한 계층별로 더 이익을 보고 뺏기
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
습니다만 사실 퇴직연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00만 원 이것은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실제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총소득이 약
3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과세표준 자체에서도 소
득공제 한도 자체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
으로 아예 바뀌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입
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맞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노동
부에서 퇴직연금을 확대하려고 했던 정책에 대해
서, 이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연금저축, 퇴
직연금 다 줄어들지 않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
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각도가
다른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000~3500 사이를 우리가 중산층 정도로 볼 수
있다면, 그 위아래도 있겠습니까마는 결코 이번
에 세제개편에서 퇴직연금 관련한 세제혜택은 줄
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노후
소득 보장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세제개편안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일종의 디스인센티브
를 가져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적으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경협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예.

○김경협 위원 지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선 소득공제 방식에서 이번처럼 세
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달라지지요,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과세표준 1200~4600만
원 사이가 중산층,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임금 수준으로 봤을 때요, 봉급생활자
들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세표준 1200~4600에 해
당되는 구간의 세 부담 13만 2000원이…… 이것
계산 안 해 보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가지고 있습니
다. 계산 다 해 봤습니다.

○김경협 위원 계산해 보셨어요?

이렇게 늘어난다 말이지요, 13만 2000원이. 이
렇게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4600~8800만 원까지는 52만 8000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는 적어도 국무회의
석상 내지는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노동부에서
해야 될 얘기들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안 되면……
정부부처 다른 데는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그냥
기재부에서 정한 대로, 기재부만 장관이고 나머
지는 다 국민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기재부에서 그냥 정해 가지고 가 버리면 아
무도 짝소리 못 하고 다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게 돼 있는데 노동부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가지고, 노동부가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기재부에 대해서 할 얘기들 좀 하고 이런 세제개편안의 문제점들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저소득 근로자한테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하다는 게 국제적으로도 증명된 것이고 제가 알기로 기재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세제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고 받들어서 향후에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서 세제나 세제혜택들이 전향적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이완영 위원 질의합니다.

○**이완영 위원** 방금 지역구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 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고맙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번 여름이 무척 뜨겁고 힘들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산하기관장님, 노동부 간부들 다 건강한 모습을 보여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뜨거운 여름을 현장에서 많이 보냈는데, 장관님 현장 좀 다니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두루두루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별로 안 까매지셨는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많이 다녔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는 이번 여름 지나면서 많이 까매졌다 그랬는데.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요새 용어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우문현답입니다.

제가 모셨고 평소 존경해 왔던 김대환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면서 어느 때보다도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셨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과거와 달리 잘 해 보시겠다는 각오나 마음가짐

을 한번 피력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대환** 벌써 다른 자리에서 여러 차례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여기서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상당히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국회가 정략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든가 이렇게 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부문이 그야말로 조금 더 넓게 시야를 가지고 길게 내다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싸우는 것보다는 열심히 절충점을 찾고 타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대환** 그래서 그런 데 다소 기여하고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저도 국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노위의 박길상 위원장님도 축하드리면서, 어느 때보다도 아마 위원장님 오서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기대가 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중노위의 공정성이라든지 독립성에 대해서 아마 노동부에서 많이 신망 받고 계셨던 위원장님이 오서 가지고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선 할 것 으면 제도개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중앙노동위원장 박길상** 노동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그런 국민적 기대에 비해서 여러 측면에서 아직도 확실한, 분명한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위원회가 노사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판정과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 보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하면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도움 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함께 좋은 정책 또 위상에 맞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전문위원 보고서가 아주 재미있는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6쪽을 보시면 임금

피크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기업 편중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제가 열흘 전부터 실무자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5760만 원을 향후 감액 이후 6870만 원, 이것도 감액 이후입니다.

저는 과거의 임금피크제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60세 정년에 맞춰서 임금피크제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냥 과거의 임금피크제 지원 제도하고 지금 정년 60세에 맞춘 임금피크제 지원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좀 지적해서 이원화된 설계를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정확합니다. 제발……

장관님, 우리 근로자 평균임금이 얼마입니까,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평균임금이 한 3000~3500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 7000만 원 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 세금을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반드시 이 소득을…… 오히려 과거에는 이 설계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년 60세로 가면서 중소기업 지원 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노동부의 행정 대상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대기업 근로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설계, 지금 시행령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반드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임금피크제가 이제……

○이완영 위원 장관님 지금 설명을 하면, 제가 5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서로 논의하실 것은 아니고 제 말씀에 대해서, 이완영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전문위원이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시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보고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번에 정년 60세 법 이전의 사업 시행에 대한 평가니까요.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적했는데 향후

개선하려는 게 더 고액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설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러니까 위원님, 임금피크제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돼 있는 곳이 대기업이고 화이트칼라 고임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피크제가 바라는 것은 그러한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임금을 좀 줄여서 근속기간과 생산성이 같이 가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관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압니다. 대기업에서 부담토록 하십시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안 해 줘도 부담합니다.

중소기업은요, 대폭…… 여기에 600만 원, 800만 원인데 3500 정도 되는 데는 아예 1000만 원, 1200만 원씩 줘 보세요. 왜 중소기업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데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기업이 도입하고 싶어도 사실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이완영 위원 장관님, 이미 제도가 설계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한 정년 60세 아닙니까,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얼마…… 추석 전에도 경총에서 조사한 게 나왔잖아요, 67%가 동의하고 있다고,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왜 자꾸 어렵게만, 임금피크제를 안 하겠다는 가정으로만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하니까 모순이 되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법 시행 이전……

○이완영 위원 아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닙니다. 2016년, 2017년 법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 일종의 경과적인 조치이고, 거기에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낀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낀 세대로 하여금 시행 이전에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강력한 유인책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완영 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 부분은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 생각만이 아니라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 생각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또 한 가지, 자꾸 이 요건을 낮춰 놓으면……

○이완영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다시 불용이 됩니다.

○이완영 위원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저하고 같이 설계를 하든지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중도 탈락률이 높다, 제가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얼마나 탈락하는지 장관님 아시나요? 작년 경우 같으면 3만 7000명 중에 1만 400명 정도, 한 30% 가까이 탈락합니다.

그런데 채용된 인턴 중에 1년 6개월 시점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몇 %로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닙니다. 노동부에서는 70% 정도 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한 육칠십 % 정도 됩니다.

○이완영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수치라는 것이지요. 이 70%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도 탈락자를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얘기 들으셨어요, 제 말씀? 차관님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죄송합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면 중도 탈락자들을 포함한, 최초의 응시자까지를, 참여자까지를 포함하면 삼십오륙 %입니다. 이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 뭐랄까요,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발표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도 탈락자 줄이는 것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들은 일단 참여자를 분모로 하느냐, 또 여러 가지 과정을 마친 후의 취업성공률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다름이다라는 지금 탈락률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인턴 참여자들이 참여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생활비 지원이 모자란단든지 아니면 또, 사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자들이 저희들은 다 지원하고 그러는데도 스스로 그냥 탈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기업에서도 중소기업에서 인력난 때문에 이 제도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무작정 스펙만 쌓고 일자리 줄 서는 그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 정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저도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매우 중요한 기업의 한 형태로 인정되어서 주무부처가 노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의 사업실적을 보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더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검토된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 예산 중에서 109억 원 정도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게 왜 전용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관께서 잘 아시면 차관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전용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지금 당장 필요하신……

○위원장 신계륜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상의드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국정과제에서도 명확히 했습니다라는 사회적기업은 정말 우리 취약계층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취업해서 사회적 가치도 만들고 또 거기서 보람도 찾고 자기 자립·자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따뜻한 성장의 기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그동안에 사실 인건비 지원 위주로 초기에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쟁력이 없는 사회적기업들이 다수 넘어왔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올해부터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정책들은 인건비 위주보다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경영 효율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판로 지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들을 해 보고 방문해 보니까 판로 지원 쪽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2011년, 2012년 실적도 그렇습니다만 13년 실적에서는 약간 방향을 바꿔서 하도록 하고, 예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00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 그래서 2017년까지 약 3000개 정도로 늘린다고 이렇게 양적 목표를 잡아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을 잘 유념해서……

예산 전용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일리가 있고 또 충분히 그렇게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전용되었고, 물론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본래 편성 목적과 다르게 쓰였고, 예컨대 비교해 보면 서울시에서 작년에 1000억을 내놨습니다. 1000억을 내놨어서 잘 썼습니다.

노동부가 이것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안 쓸데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어딘가 잘못 초점을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장관께서 설명한 2013년도 사업 방향의 전환 이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단순히 사적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도 같이 추구해 나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장 신계륜 그렇다면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정확히? 법적인 대상이 어디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요건을 저희들이 설정해 놨고, 주로 사회적기업들은……

○위원장 신계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건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에 국한됩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대상 거기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장 신계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속하지 않은 이런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현재 법적으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확실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의 대상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것은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신계륜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해당이 안 되지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기업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것들은 예비사회적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의……

○위원장 신계륜 예비적사회적기업이 아니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배타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안 들어갑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다음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안 들어갑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신계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마을기업도 안 들어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부처가 다 다르지요.

○위원장 신계륜 물론 부처가 다르지만, 사회적기업도 부처가 다르지요. 꼭 일자리만 창출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도 안 들어가고.

제 말은 이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대상을 너무 작게 보고 축소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의 경험을 보면 대상이 좀 광범하지요. 장애인도 지원하고 여성 기업가도 지원하고, 하지만 사업적 기업의 범위를 좀 더 확

대하고 있던 말이지요. 여러 자치구에서 그것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못 쓰는 이 유가 사회적기업법에 너무 묶여서 거기에 국한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크지 않나라는 물음을, 의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법에 의해서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높은 수준에서의 지원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나 컨설팅 지원도 들어가구요.

○위원장 신계륜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집행이 저조한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렇게 작은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것이 고쳐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속 그 안에 놀지 않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데 위원님 얘기도 동의합니다마는 저는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협동조합들은 사실은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목적들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기업법에 의해서 정말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게 너무 여러 가지 토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또 분별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직구를 좁게 해 놨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조금 더 넓히면서 추후적인 관리라든지 자격요건들의 관리를 더 해 나가면 말씀하신 그런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일선 자치구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훨씬 중앙정부보다 더 범위를 넓게 하면서도 많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하시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높이자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단기적으로 해소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뭘 장기적으로 검토해요? 이게 분석해 봐서 예산집행이 2년째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하셔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액이 12년도에 이미 증가했고,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도 아마 상당히 예상에, 거의 100% 예상액에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위원장 신계륜 보세요,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여기 자료만 놓고 얘기할게요.

2011년도, 2012년도, 예비적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실적 2011년도 집행률 69.3%, 2012년도 집행률 67.5%, 그다음에 일자리 참여 인원 달성률 2011년도 61.1%, 2012년도 56.3%,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2013년도 통계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료 볼 것 없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뭔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찾으면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에 비추어볼 때 노동부가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법의 영역도 제가……

제가 예를 든 것은 지금 일선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하고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제도개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제안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은수미 위원 질의합니다.

○은수미 위원 은수미입니다.

저는 현안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조합과 같은 대표가 없이 노동이 있을 수 없다, 노동기본권이 있어야만 노동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헌법도 있고 노동법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박근혜정부가 이 점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국정과제 제99항을 보면 ‘대화과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러면 대화와 상생을 논의할 상대방, 즉 노동조합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도 아마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만 출범 7개월 만에 고용부가 전교조 인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셨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불법과건 아니다 이런 판정도 했습니다. 즉 있는 노조마저 없애겠다, 그리고 기업의 불법적인 노동권 없애기, 저는 이것을 노동권 세탁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노동권 세탁에 동조하고 있다, 즉 이런 기본적인 노동권조차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문제부터 질의를 하면서 방하남 장관님의 노동관을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서 인가 취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최봉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시는 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무시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봉홍 위원 예의는 아닙니다마는 원래 자체가 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 질의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카운팅을 더 해 주십시오.

저런 무례가 일어나는 것은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노동관을 여쭙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장관께서는 ILO 등 국제기구에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없애는 현행법 개정 권고를 계속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법 개정 논의가 있으니 유예를 해 달라라고 호소를 했구요, 그다음에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의 노조가입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살펴보겠다, 이게 인사청문회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월 26일자 영자신문에 답변을 보내셨더군요. ILO의 클레오파트라, 담당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구절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ILO는 자신의 기준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있다, 우리 국내법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결국 ILO나 국제적 기준 이것은 너희들이 알

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국내법대로 일고의 가치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대답과도 다르고, 이것은 노동탄압을 하겠다, 어떠한 유예조치도 없다 이런 답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영문을 그대로 읽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도 그 영문 기사를 봤는데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은수미 위원 번역이 아니라 이것은 영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러니까 말……

○은수미 위원 말을 그렇게 안 했는데 영문을 이렇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지요.

○은수미 위원 그러면 영문서로 대답을 하신 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영문서로 대답한 게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뭐라고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지금 정확한 앞뒤 상황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 영문 기사에 있는 문장을 보고 저도 당황했습니다마는 어쨌건 정확한 번역이 안 되어서 제가 원래 말한 취지가 와전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ILO에 잘못 말했다고 시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8월 26일자 영문신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서한을 보냈습니다. 동일의 클레오파트라라는 담당 대표자가 또다시 서한을 보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안이 긴급성(urgency)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긴급성 때문에 도대체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다시 서면으로 달라, 그런데 제가 ILO에 문의를 해 봤더니 클레오파트라는 이 영문 서면을 받고 한국의 방하남 장관은 'ILO는 ILO 기준이 있고 우리 한국은 그냥 한국의 노동법이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ILO에 지원금도 내요. 그렇다면

조치를 취하하셨습니까?

저 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때하고는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만약 잘못되어서 전달이 된 것이라면 ILO에게 이거 잘못됐다라고 시정하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마 영자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명조치가 필요하다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은수미 위원** 그러면 해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교조 인가 취소하시겠습니까? 이미 시한을 통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지난 시기에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참아달라, 현행법이 어떻다 이것은 여기서 논의하지 맙시다, 우리 알고 있기 때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인가 취소를 하겠노라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시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마 전교조에서도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수미 위원** 방향을 안 정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

○**은수미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노사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있는 노조 조차도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노조 조직률 9.6%예요. 몇 %까지 낮추시는 게 목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해 보시겠다고요?

거기다가 국제적으로 문제까지 일으키셨어요. 영자지에 딱하니 아주 쉬운 문장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너희들 기준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 기준 있다’ 이렇게 답변까지 해 놓으시고 시정조치도 안 하고 그래서 국제적 문제는 일으키고 이제는 국내적으로는 ‘전쟁을 하시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이면 어떻게 아니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표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부에서 정확한 시정요구서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보냈고 지금 전교조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바라는 사실 전교조는 보통 노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교조가 사회 모범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도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털고……

○**은수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잠깐…… 아마 위원장님께서 더 답변하실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가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될 노조인 것은 맞습니다. 그 이전에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은 고용부지요. 국제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켜 놓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갈등을 불러일으킨 데다가 고용부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때 ‘해고자 구직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노라’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장관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모범적인 태도를 먼저 보이시고 나서 전교조나 노동조합에게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시라고 훈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인사청문회 때하고 입장이 달라지신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달라진 게 없습니다. 두 가지, 제가 인사청문회 때 답변드렸던 것은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전교조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전교조도, 그 어떤 노조도 위법한 규약을 가지고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시정해서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단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이나 노조법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들이 앞으로 논의될 수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제도적으로 개선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으로 문제를 언론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 이 전교조 문제는 같이 연결하시는

것은 좀 저로서는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은수미 위원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예.

○은수미 위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법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청문회 때도, 그다음에 지난 국회 때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어요.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를 할 거고, 더군다나 전교조뿐만이 아닙니다. 해직자나 실직자나 실업자 같은 정말 취약한 사람들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는 것, 노동의 권리를 주는 것 이것 중요하다 동의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은 회피를 하시고 다시 현행법을 묻는 그런 꾀수를 7개월 만에 배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10월 6일자로 왔지요? 여기에 대해서 저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 의 그 ILO에 따르면 기준에도 보냈습니다. 계속 보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에 대해서 영자신문에 그렇게 내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금만 더 주세요.

꼼꼼하게 따지고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대기업 돈세탁하고 노동권 세탁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파견 아니다’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와 오찬을 한 지 19일 만에 발표를 하셨더군요. 더군다나 ‘불법파견 논란은 있으나 불법은 아니다’, 아니 논란이 있으면, 도둑질한 논란이 있으면 실제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더 재조사를 해야지 어떻게 ‘아니다’라고 규정을 합니까? 이 문제는 제가 국감 때 별도로 명확하게 따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자료를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료를 그렇게 줄이세요. 그래서 자료 문제도 다시 한번 따지겠는데요, 여기서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게 발표입니다. 그러면 재조사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이 조사를 충분

히 해서 한 두 달 정도 우리 지방관서 그다음에 우리 중앙본부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봤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재조사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수미 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왜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서비스업이라서 달라요? 아니, 한국의 헌법과 노동법이 서비스업 노동자 다르고 제조업 노동자 다르게 적용됩니까? 그게 지금 고용부가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청직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탄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 정말 엄격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최봉홍 위원 예,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종훈 위원이 지금 발언하셔야 되는데요.

○최봉홍 위원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십시오.

○이종훈 위원 어차피 늦었는데요, 하세요.

○최봉홍 위원 오늘 회의는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안건이 2012회계연도 결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현안 문제가 전부 나온다면 끝없는 얘기인데 중간에 발언 중에 동료 위원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은 우선 형식적으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회의 진행에 있어서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 나왔을 때는 의장님이 제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회의 원칙에 맞추어 가지고 회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은수미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님, 존경하는 최봉홍 위원님, 형식적으로 사과하실 게 아니라 명확하게 사과를 해주십시오.

○최봉홍 위원 그 내용을 따져 가지고……

○은수미 위원 이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봉홍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동안 만약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최봉홍 위원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최봉홍 위원 내용에 안 맞는 얘기 같으면 안 해야지요.

○은수미 위원 앞으로 그냥 ‘괜찮다’ 이러시겠습니까? 저는 명확하게 사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현안질의는 결산 때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관례입니다. 어느 상임위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환노위조차도 현안질의 안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며칠 전이지요, 환경부 때도 현안질을 했습니다.

결산심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현안질의가 제대로 돼서 그것을 위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결산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까지를 따지시는 것은 저는 정말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자, 이제 은수미 위원님 발언 하셨고,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 따진 것이니까 제가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예산이든 결산이든 정책질의는 중요한 것에 대한 커다란 일탈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교조 문제도 결산의 일환입니다, 지난 시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질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질의 끝내고 제가 좀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위원 질의합니다.

○이종훈 위원 경기도 성남 분당갑 출신 이종훈 위원입니다.

저는 순수하게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예산에서 높은 불용액이 2012년도에 좀 문제가 되는데요. 2011년도에 522억, 불용률이 4%인데 작년에는 1795억, 10.8%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나오다시피 1273억이나 전년 대비해서 불용 예산이 절대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기는 한데, 그 바로 밑에 주요 내역을 보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아까 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육성, 그다음에 좀 더 밑에 가면 취약근로자 근로개선 지원, 그러니까 종합하면 사회적 약자, 즉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불용이 많다는 것 여기에 집중돼 있다는 게 저는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정말 이런 양극화 사회에서 돈이 꼭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예산이? 여기 예산을 불용이 심하니까 줄이자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장관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이것을 좀 사업 디자인을 기획 단계부터 그리고 집행이나 요건이나 이런 것을 잘 디자인해서 불용액을 줄여야, 예산만 배정해 놓으면 다가 아니고 줄여야 실질적으로 우리 취약근로계층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하고,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큰 것이 더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나씩 보면요,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이게 두루누리사업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10인 미만 월 130만 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자 사용자 부담분, 둘 다의 부담분을 50%를 지원하는 것……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맞습니다.

○이종훈 위원 이 불용액이 750억 원으로 제일 많아요, 전체 그중에. 그러니까 불용 퍼센티지도, 율도 28.3%지만 절대 규모가 750억 원으로 굉장히 크다는 것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50% 지원해 주면 50% 보험료 내는 것도 나는 싫다, 그런 돈 내기 싫다라는 노사의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일단 가입하면 건강보험 산재보험 여기에 딱 포착이 돼서 그것도 추가로 내야 되니까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재정학회에 바로 고용노동부가 작년 말에 발주한 것인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0개월이 지났는데도 89.9%입니다. 90%가 ‘나 이런 제도 있는 줄 몰랐다’ 이런 거예요.

2월부터 시범사업하면 그 전부터 홍보하고 했을 텐데 200억이라는 홍보비를 10개월 동안 써놓고 이렇게 90%가 ‘몰랐다’라고 하는 설문결과가 나오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홍보비를, 제가 보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데 죽 그냥 홍보하고 ‘우리는 홍보할 만큼

했다. 그런데도 모르겠다는데 우리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 안 되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타 것이면 거기에 딱 집중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전략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는 대체적으로 전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찾아가는 가 입서비스반’ 이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종훈 위원** 그런 것 해서 236억 원 이렇게 해 놔던데 콘셉트는, 기본개념은 좋은데요, 2013년도 8월까지 불용률이 또 51.7%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지금 불용액이 5384억 원이나, 물론 8월 말까지지만, 지금이 아니지만 한 달 전까지 이렇다면 과연 이런 홍보도 성과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2012년 결산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 또 반영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종훈 위원** 뭐 좀 대책이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말씀하신 제도 개선, 내실 있게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치들은 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정책 대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그것도 이제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인데, 처음에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디자인 할 때부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정책 대상으로 지금 정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종훈 위원** 아니, 장관님, 그 대책이 있냐고 여쭙 봤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 집행률을 올리고, 올려 가면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미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실무적으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 따로 해 주세요, 국감 전에.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 글이 있습니다. 10인 미만 130만 원 미만 그렇지요,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종훈 위원** ‘그 사람들만 어렵냐? 10인 이상에도 130만 원 미만 근로자 많다. 우리들은 어찌

란 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처음에 인수위에서 안을 마련할 때부터 그런 안들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종훈 위원** 아니, 두루누리사업은 인수위하고 상관없이 예전부터 입안되고 추진됐던 것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10인 이상 130만 원 미만까지, 어떻게 보면 소득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넓히는 방안들을 고민했습니다.

○**이종훈 위원** 예, 이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2년 보면 330억 정도가 불용으로 불용률은 23.7%입니다. 그런데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I, II가 있지 않습니까? I은 저소득이고, II는 청년하고 중장년,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뜯어 놓고 보면 I, 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은 초과 달성이고요, II 중에 청년은 한 80%가 넘어요. 그런데 중장년이 24.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중장년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디자인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2012년에 이미 이것을 다 알았을 건데 2013년에는 어떻게 이것을 고치셨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수정해서 반영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패키지2는 상당히 야심차게 시작한 것으로 청년층은 어느 정도 하는데,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새로 올해 제도 개선을 하면서 중장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용촉진 프로그램들이 중복되고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하나로 묶으면서 그 사업들을 지금 패키지2,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종훈 위원** 이게 담당자 누구예요? 황 국장님 나와서……

2013년도는 지금 어때요, 실적이지?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아마 작년에는 제도 초기여 가지고 아무래도 홍보도 잘 안 되고, 요건도 물론 설계를 KDI……

○**이종훈 위원** 요건이 너무 엄격했던 거예요, 작년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집행에 문제가 없고, 올해는 작년처럼 불용이 전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이종훈 위원** 올해는 불용이 없어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예.

○**이종훈 위원** 올해는 예산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늘었어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약간 늘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예.

○**이종훈 위원** 그 사업 내용 좀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세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고용촉진 지원사업들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불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대적인 통계인데, 한번 지난 3년간 실제로 시장에서 수요가 있느냐, 국민들 가운데 정말 이 제도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도 역시 목표를 높게 잡아 났습니다, 중장년층은. 그러나 중장년층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거나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불용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 아니고, 더구나 1차 연도 사업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진짜 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한 거지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종훈 위원** 32페이지, 33페이지 부분 하나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 오늘 와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하네요.

징수결정액, 이게 크게 중요한 게 2개인데요, 부담금하고 변제금…… 사업주부담금은 보험료처럼 내는 거고, 변제금은 구상권 행사해서 다시 거둬들이는 것 아닙니까, 해당금 지급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종훈 위원** 그 징수결정액이 1조 4378억 원을 예상했는데…… 아이고, 수납액은 3844억밖에 안 돼요. 이게 3분의 1도 아니고요, 3분의 1보다도 더 낮습니다, 경상이전수입하고 수납을 생각하면.

그런데 이것을 하나 더 들어가 보면, 표를 보십시오. 32페이지 표 보면 법정부담금은 수납률이 89.8%인데 변제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해당금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해서 변제금 수납이 거의 없으니까 이 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올릴 수도 없고, 이 문제 제가…… 뭔가 해결하는 방안이 없으면 이 문제 계속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결 방안이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이종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수납률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여간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외국의 경우에도 이게 레비(levy) 변제율은 상당히 낮은 걸로, 이렇게 낮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낮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변제금 회수에 일단 노력을 더 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훈 위원** 그런데 장관님, 변제…… 우리는 처음부터 디자인을 변제를 다시 구상권 해서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부담금률을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낮은 거 선진국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가면 이거 계속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그렇다고 그냥 둘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가장 좋은 것은 아마 일단 법정부담금 비율을 더 높여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개선 방안들을 고민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사회보험료 방식에 가깝게 간다 그러면 기업들이 가만있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이종훈 위원 저는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종훈 위원님, 시간을 충분히 못 줘서 미안합니다. 더 드릴 수 있었는데 아마 지금 국감계획서 채택이 매우 긴급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두 시간 안에 채택이 안 되면 국감 일정이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감계획서 채택 등 휴식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위원장 신계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는데 국회법상 지금 국정감사계획서를 포함한 국감 관련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를 잠시 중단하고 국정감사 관련에 대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법안은 국회법 제77조에 의거해서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201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이 둘째이고, 세 번째는 2013년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세 번째입니다.

이상의 3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6시56분)

○위원장 신계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은 양당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일정이 조정될 경우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즉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요점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일 토요일까지 총 20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감 대상기관은 총 53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모두 위원회의 선정 대상기관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 국가기관과 산하 공공기관들입니다. 또한 현장감 있는 감사를 위하여 세 곳의 현장시찰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위원의 구성, 감사일정,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사항, 감사방법과 증인 등의 출석요구사항,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감계획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의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16시58분)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2년도 결산과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 방금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게재되어 있는 모든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공통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자료를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정부 등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제출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대상기관에 요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국정감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감사대상기관에 바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7시00분)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관증인은 방금 채택한 국감대상기관의 증인으로서 국감계획서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해서 선정했습니다.

각 기관의 증인 선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을 포함시키고 지방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소속 지청장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상근 임원급 이상을 증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는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선정해서 동 기관 국정감사 때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각 국감대상기관별 증인명단과 출석요구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배부가 안 됐는데요?

○**위원장 신계륜**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명단과 출석요구일 작성이 아직 덜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작성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우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감기관 증인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도 괜찮겠지요? 아까 대상기관을 확정했기 때문에 따로 명단을 부르지 않고 수감대상기관 당연 증인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에 일반증인 신청현황입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증인·참고인 명단입니다. 증인 19명, 그다음에 참고인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참고인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참고인이 중복되어 있습니까?

○**서용교 위원** 최예용이 두 군데 있는데요, 21번하고 23번.

○**위원장 신계륜** 참고인 23번을 빼겠습니다, 최예용.

그래서 24번이 23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입니다.

증인 19명, 참고인 4명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증인 21명, 참고인 15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첫 번째 증인명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됐는데 대표……

○**김성태 위원** 부사장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부사장이 없답니다. 부사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증인 1번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박상범 이게 추가됐습니다.

○**김성태 위원** 부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신계륜** 지금 확인했다고요.

○**김성태 위원** 다 확인된 이상……

○**위원장 신계륜**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증인과 참고인 등을 지정된 감사일 및 국정감사 장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명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34번에, 지금 KT 노무관리 때문에 작년에도 문제가 됐는데 지난번에도 마크를 강하게 해서 우리가 못 불렀는데요. 올해는 이것을 꼭 불러야 되는데 지금 김성태 간사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KT 스카이라이프 노조위원장만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를 함께 불러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제가 KT 이석채 사장을 불러서 사실상 이 문

제를 사회문제화시켜야 되는데 일단 스카이라이프 노조위원장만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안 부르는 게 낫고요. 문제철 대표이사하고 같이 불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노사가 같이 앉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위원장만 덜렁 와 가지고는 아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이사랑 함께 부르다면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박태언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명숙 위원님 말씀은 34번 참고인 박태언 KT스카이라이프 노조위원장은 대표이사하고 함께 부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부르든가 아니면 빼라는 것이지요?

○**한명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철 사장을 함께 부르든가 아니면 부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KT와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에 을지로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갑을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다루는 을지로위원회가 이 노무관리 때문에 KT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KT랑 간담회를 할 때 KT의 답변이 의미 있는, 심도 깊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언제까지 주겠다, 10월 10일인 것 같습니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답변을 우리가 보고 문제가 있다면 증인 채택을 우리가 중간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KT 이석채 사장을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좀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34번 참고인은 아마 출석일수가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단은 그러면 34번 참고인은 빼고, 그 이후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문제철 사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한명숙 위원** 환경부 소관도 다 말을 할까요?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는, 우리 환노위가 4대강을 이번에 국감에서 안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토위가 보 건설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환경부는

수질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전 장관이었던 이만의 장관님을 허락을 하셨는데 일단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를 우리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 채택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문서검증 의결을 제가 요청을 해서 감사원 감사자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서 여기서 이 부분이라도 하고, 아니면 이도승 감사국장을 이만의 장관하고 함께 부르다면 수질 문제에 대한 환경부 감사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도승 감사국장은 국토부에서는 세 번이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서도 한 번 충분히 부를 수 있는데 간사님께서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하나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양 쪽이 다 안 되면 문서검증 의결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은수미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어서, 환경부 경우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밀양 송전탑 문제하고 4대강 관련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대강 관련해서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외에는 다 빠진데다가 심지어는 참고인도 합의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러면 결국 새누리당은 4대강은 안 하겠다, 국감에서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의, 이도승…… 황인철 씨는 참고인이예요. 그런데 참고인도 합의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정동일 환경산업기술연구원 본부장까지 다시 한번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저는 4대강은 회피하겠노라고 언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송전탑 환경피해 관련해서도 이 두 분 참고인들조차도 동의를 안 해 주세요. 증인을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참고인을 동의를 안 해 주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부와 관련해서도 보면 제가 다른 상임위의 어떤, 그러니까 환노위만 무리하게 부

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다른 상임위에서 어떻게 불렀나를 봤습니다.

우선 4대강 관련해서 국토위에서는 허창수 전 경련 회장까지 불렀습니다. 이게 4대강 담합 의혹 때문에 부른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심상정 위원님께서 별도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조차도 안 된다고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를 다 빼셨고요.

그다음에 미창위에서는 KT 이석채 회장 불렀습니다. 미창위나 환노위나 비슷해요. 미창위하고 환노위가 다 지금 KT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잘되면 굳이 증인 채택을 했다 하더라도 오시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KT 회장을 미창위에서는 부르는데 환노위에서는 이게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좀, KT 이석채 회장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요청했는데 김성태 간사께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됐는데 KT가 지금 자살에, 사망에, 거기다가 내부 문제까지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따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정무위를 보니까 정무위는 담합입찰 문제로 삼성전자서비스하고 삼성전자를 다 불러서 오시는 분만 세 분이예요. 신종균 사장, 권오현 사장 그다음에 우리가 합의한 박상범 대표이사까지 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아니 새누리당이 삼성의 호위무사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삼성을 이렇게 봐 주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본부가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택배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금 빼셨고요.

거기다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참고인들을 계속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인들 지금 빠진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돌봄강사라든가 안산시흥 일반분회장 문제라든가 이렇게 참고인들 빠진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하청이 문제인데 삼성전자서비스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공항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국토위 같은 경우도 SK를 불렀는데 그쪽은 SK건설, 우리도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독성 문제

나 위험물질 문제나.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반드시 좀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 다 발언 끝났습니까?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저는 구체적인 문제보다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마치 구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참 불편합니다.

오늘 황우여 대표가 아침에 대표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당대표나 당론이 국회의원 개인의 헌법상의 지위에 우선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17대 때도 재정경제위원회를 했는데 당시에 위원장님이 새누리당이었어요. 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증인을 요청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것을 대체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상의도 없이 제출을 합니까? 이거는 나는 대단한 월권이라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기 위한 증인채택은 헌법상 자기 권한입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정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여야가 공감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존중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유별합니다, 우리 환노위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 이번 국감이 기업감사나 또는 전경련 회장을 부르는 것을 무리한 사례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때입니다.

저는 우리 환노위나 정무위나 이렇게 재계나 노동 또는 중소기업 원·하청 불공정 이런 부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런 상임위 같은 경우는 마땅히 불러야 됩니다. 미국도 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러서 재계와 노동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어떤 정책이나 제도 수립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전경련 회장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경제5단체가 정기국회에 열네 가지 요구사항을 보냈는데 그중에 여

섯 가지가 환노위 사안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98%의 지지로 통과된 화평법을 무려 3개월 동안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까지도 이게 ‘디테일에 악마가 있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심상정은 기업을 죽이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정도 문제인식을 갖고 계시면 이 법을 다루는 환노위에 와서 말씀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대표 발의한 저한테 오든지요. 이제는 재계도 청와대나 여당에 가서 로비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압박하는 이런 식의 태도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이해당사자의 한 축으로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타협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자세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경련 회장을 요청드린 것은 전경련 회장께서 특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문제 인식이나 요청이 많으시고 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환노위에 말씀이 없으셨고 저도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셔서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또 노동계도 불러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지금 노동부가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무조건 높은 사람 부르면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정책결정 책임자가 오셔서 책임 있게 말씀을 하셔야 뭔가 변화가 있지 부회장 또는 부사장님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국정감사에서 다루고자 했던 취지 자체가 저는 아예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서 원래 주문을 드렸던, 예를 들면 삼성전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책임자가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신다면 저는 사장이 오셔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 작년부터 계속 다루어도 책임 있는 대책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최종결정 책임자가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봉홍 위원님!

○최봉홍 위원 고용노동부 여기에 쌍용차 세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이때까지 해결 못 한, 완결을 못 지은 데 대해 가지고 증인 요청이 야당으로서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실태를 말씀드리면 그저께 신문에 쌍용차는 새로 선출된 김덕중 위원장하고 현 위원장하고 회사하고 1월부터 희망퇴직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협상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택이 되더라도 이 세 사람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나오겠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사족을 달아 졌으면 싶은 것이 견해입니다.

○심상정 위원 취소가 아니고 합의……

○최봉홍 위원 세 사람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 안이 된 다음에 안 나오겠다고 하면…… 대표가 나오면 실제 영업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 위원 협상 중이니까……

○최봉홍 위원 예, 협상 중이니까……

○위원장 신계륜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장하나 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최대한 짧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짧게 진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이 증인·참고인 목록만으로는 저는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뭔가를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방에서 일하던 동료들과 또 많은 노동부·환경부 관련된 문제를…… 또 바깥에서 피해를 보셨다거나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우리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국감인데요, 길게는 1년 동안. 이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후로 증인·참고인을 합의를 통해서 더 추가할 수 있다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더 논의하고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통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새누리당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당, 야당의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증인·참고인 목록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이거는 되네, 안 되네’, ‘왜 이 위원님은 국정감사에서 이거를 문제제기를 하실까?’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원하는 국민들이 그 뒤에 서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제가 주장하는 증인·참고인 그리고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에 어떤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인·참고인 목록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최소한의 이야기, 대답이라도 듣고 싶고요. 그러기 전에는 저는 이 증인·참고인 목록으로는 그냥 국정감사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 아까 제가 목록이라고 앉아 있는데 받은 것에 이름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삼성전자서비스 부사장이라고 왔는데 존재치도 않는 부사장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정말 너무 가볍고 깊이가 없는 그런 증인·참고인 명단을 갑자기 의결하라고 눈앞에 받았을 때…… 이거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부사장에 이름도 비워 놓고 와서 이거를 사인하라고 해 놓고, 해프닝도 아니고, 부사장이 없어서 대표이사를 넣고……

아까 정무위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아닌 삼성전자의 대표도 둘씩이나 부르고 있는데 이런 거 완전히 묵살되고요. 사실 우리 목록에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장을 우리는 부르지 않았습시다. 지금 국감에서만 4년, 5년째 내리 현대차 불과 문제로 부르고 있는데, 저번에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이와 와도 해결되는 게 없이 또 1년이 가니까 정말 책임 있는 정몽구 회장을 이 자리에 부르자라고 했는데도 또 현대차 사장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또 현대차 문제 다루자는 것밖에 안 되고요.

국회가 국민들 앞에 ‘그냥 이 정도 하면 욕은 안 먹겠지’ 면피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증인·참고인 명단은 납득할 수도 없고 무의미합니다. 이런 국감이라면 안 하고 말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잠깐 그리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봉홍 위원님께서 언론을 거론하면서 지금 기업별 노조하고 쌍용차 지회하고 회사 측이 뭔가 실직자 대책을 협의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우선 첫 번째 언론에서 본 것은 희망퇴직자 관련해서 대책을 뭔가 마련하겠노라, 그런 TF를 만들겠노라라는 이유일 회장의 언급이 있었던 거고요. 제가 지회장 등등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봉홍 위원 현재 노조위원장은 얘기가 되고 있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습시다.

○은수미 위원 아니요, 제가 지회 쪽의 해고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되어 있어서……

○최봉홍 위원 김덕중 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 말은 확인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쌍용차 쪽을 부르겠다는 것도 쌍용차 경영 문제에 뭘 어찌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 즉 해고자와 실직자 문제 등에 관련해서 기업이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 문제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국회가 좀 더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차원에서 국회에 나와서 오히려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이 올해는 이렇게 해결되고 있노라’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문제도 지금 10년째 불법 파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탑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루에 11만 원인가, 13만 원씩 벌금 물면서 농성을 했고요, 그 취약한 지회 사람들은. 정몽구 회장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으면서 불법을 자행해 왔습시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게 양 쪽 다,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을 이 자리에 부르고 동시에 농성을 하셨던 분들이나 또한 그 하청 지회에 계신 분들, 혹은 하청노동자가—저희가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참고인으로 오셔야지요. 아니, 그렇게 농성을 해도 얘기가 안 된다니 국회에서 사실은 조율을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양 자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갑한 사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원장 신계륜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하나 위원님은 국감 무용론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시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일정이 무척 촉박해서 첫날까지 제대로 통지서가 전달될 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감을 일정대로 안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하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부족하지만 여야 간사 간에 어쨌든 합의한 사항입니다. 저 자신도 이 안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합의한 사항을 일단 의결해 주셔서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시간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마지막 본부 감사 때 충분히 국감 증인으로 선정해서 부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타당하십니다. 지금 의논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이것이 만약에 긍정적 효과가 나온다면 안 부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을 봐서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서로 국감에 다시 부를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은수미 위원님도 많은 증인 신청 목록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중에 삼성전자 사장은 현재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은수미 위원 아니요.

○한명숙 위원 서비스지요, 서비스. 삼성전자서비스.

○위원장 신계륜 아니, 삼성서비스는 사장이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장하나 위원 아예 빠졌습니다.

○은수미 위원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삼성전자가 아예 빠졌나요?

○은수미 위원 예.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삼성…… 예.

○한명숙 위원 지금 저희들이 발언을 한 것은 그냥 발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절충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신계륜 지금으로서는 절충이 불가능하고 오늘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보내지 않으면 첫날……

○한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되는데요.

○위원장 신계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추후에 협의가 가능한 문제이고요.

○한명숙 위원 증인은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신계륜 예, 증인은 가능한 문제이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일 까지만 출석하면 되니까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KT 이석채 사장을 비롯해서 비씨카드 이강태 대표이사 또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추후에 다시 신청을 해서, 그 상황을 봐서 다시 증언대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장하나 위원 저도 발언을……

○위원장 신계륜 발언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양보할 용의도 있는데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책임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 당 간사가 합의하고 합의 안 하고 다 하면 두 분만 하면 되지 뭐하러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 가지고 입 아프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원칙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합의 했는데 불만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 이런 자세로 회의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기 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게 회의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언제 일정을 잡아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또 분명 하게 위원들 간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양당 간사가 합의했으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지금까지 다 통과를 시켜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헌법상의 자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야 간사께서 합의하거나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여기 상임위에서 의사진행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심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간사 합의한 것이 국회법에 따라서 합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국회법에 따라서 합의를 하고 의사일정을 정한 겁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없었던 거를 의사일정으로 넣은 겁니다, 추가한 거를 동의했고. 그렇게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사항을 받

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국정감사 안 하는 거지요. 일정을 못 잡는 거지요.

○**심상정 위원** 아니, 안 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장 신계륜** 오늘 의결 못 하면 14일에 증인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 의견을 물어 주세요, 상임위에서.

○**위원장 신계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결정하지 못하면 14, 15일에 국정감사 못 합니다. 증인 못 부릅니다. 없는 상태로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국정감사도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결은, 증인에 대해서는 의결해 주시고 그 이후에 추후에 10월 31일에 본부 국감이 있으니 이 날에 집중해서 증인들이 지금 문제 나온 것들을 합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여야 간사 합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따라 주시면 좋겠고요.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두 분 간사 위원님께서서 합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견을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일단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기로 된바 큰 틀에서 환노위도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일정은 또 간사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저는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4일에 다른 상임위들이 다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시작하고 환노위가 시작 못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물론 언론이라든가 국민 여러분들이 환노위 전체를 가지고 질타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증인·참고인 건에 대해서는 왜 환노위만 14일에 국정감사를 시작 못 했는가, 이것도 알려 내고 그 안에 증인·참고인 건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었음이…… 이거는 국민들의 알권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4일에 증인 못 부른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24시간 더 고려를 해 보고 15일에 환노위만 시작을 하더라도 지금은 증인·참고인 건을 넘길 게 아니라…… 이제 한 20분밖에 남지 않았고 증인·참고인들에게 통보하기도 저는 시간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 끌기에 이끌려서 여야가 합의보다

는 뭐랄까요,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이런 의결은 저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을 더 증인·참고인 논의를 해 보고 환노위 만이라도…… 환노위는 하루 늦게 국감을 시작하더라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낫지 이런 관행이 굳어져서 하나하나한 국감을 한다거나 상임위에서 그냥 여야 위원들이 적당한 수준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국민의 문제를 넘기는 것은 저는 용납하기가 힘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의결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은수미 위원** 그게 방법이 가능합니까, 절차적으로?

○**위원장 신계륜** 불가능한 것은 없지요. 위원들이 결정하면 하는 것이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이것을 지금 받아 보면서 참 국회의 운영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한테 오늘 전달해도 늦을 겁니다. 내일 전달하면 더 늦습니다. 내일 전달하면 아마 15일 국감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정말 문제가 있지만 일단 여야 합의사항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하고 추후에 여야 간사가 다시 모여서 지금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면서 보완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큰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간사님!

○**김성태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간사님!

○**홍영표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진행하시지요.

○**홍영표 위원** 아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위원장 신계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장으로서 견해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홍영표 간사님, 소신 있게 얘기를 하셔

야지요, 합의를 해 온 당사자니까.

○**홍영표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오늘날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오래 전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했고 오늘 9시 그다음에 본회의 끝나고 나서 11시,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늘 오후 내내 협상을 해서 간사 간에 할 수 있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다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합의한 것을 통과를 시키고 마지막 국감에서, 저희가 일주일 전에 또다시 협의를 하면 되니까 논의를 더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것을 합의를 못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감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 존경하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증인 채택과 또 의사일정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입장이 다 수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국회라는 곳이 여야가 있는 것이고 또 각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정말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한테도 간사인 저도…… 참 이 사람들, 저한테 지금 할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 어려움을 토로를 안 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도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과 운영을 위해서 협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위원님 여러분들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사실 한 20일 넘게 민주당 홍영표 간사님과 참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망연자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말수를 아끼면서 또 우리 위원회를 위한 판단으로 저도 여기서 이 정도, 여야 간사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서 여러분들에게 제출한 내용인 만큼 우리 민주당 또 야당 위원님들도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과 운영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기 시작한다면…… 결코 새누리당 간사인 저도 오늘 정리된 내용 전혀 만족치 않습니다. 저희 주장은 하나도 제대로 반영된 게 없습니다. 참고로 그것

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십시오. 그럼에도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이 관련 의견들 우리 위원님들 한 차례씩 다 돌아왔습니다. 마냥 회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과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판단을 해 주시지요.

○**은수미 위원** 하나만 더 김성태 간사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사실은 김성태 간사님이 저희 야당 위원들이 요구한 상당수의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것으로, 왜냐하면 간사 간 협의를 해야 되니까 대표로 반대를 하셨겠지요. 반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간신히 오늘에 와서야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문제제기를 들으셨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만약 오늘 일정에 우리가 합의를 해주면 김성태 간사께서는 저희 야당 위원들, 동료 위원들이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 추가 협상하고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김성태 위원** 아니, 이렇게 직접 묻지 마세요, 당 대 당으로 협상을 한 것이니까.

위원장님, 이런 것은……

○**은수미 위원** 저는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매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는 더 심해졌는데요.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10월 14일이 아니라 정말 10월 15일 날 국감을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오늘 일단 절반일지 3분의 1일지 10분의 1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증인과 참고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의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14일도 안 되고 15일도 안 됩니다.

○**장하나 위원** 15일은……

○**은수미 위원** 15일은 되잖아요.

○**위원장 신계륜** 15일도 안…… 누가 합의된다고 보장을 합니까? 누가 합의된다고 보장을 합니까?

그래서 국정감사 일정안에 대해서 의결한 만큼

국정감사를 반쪽이 되든 10분의 1쪽이 되든 일단 진행을 하시고.

제가 양당 간사께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아마도 증인·참고인 신청이 개별 의원의 취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의 입장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다르리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결한 직후부터 양당 간사께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제반 문제를 다시 협의하시고 상임위가 진행되고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합의에 이르면 바로 증인을 채택하고 참고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잠깐 정회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신계륜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위원님, 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일단 오늘 확정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 신계륜 예.

○은수미 위원 당의 입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정무위, 국토해양위 그리고 미창위 이런 데서 누가 합의가 됐는지를 다 봤습니다. 다른 데서 다 합의된 증인을 김성태 간사가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의 입장이 미창위에서는 그것을 합의해 주고 환노위에서는 합의를 해 주지 마라, 이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저는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께서 이것을 반대하시거나 혹은 새누리당 위원 전원이 환노위 국감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어 본 거지요, 아까. 제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읍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태 위원 은수미 위원님, 무슨 의혹이 있겠습니까.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신계륜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니깐 일단 지금 합의한 증인과 참고인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의결하시기 전에 이것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14일 증인은 이미 시간상 출석을 법적으로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안 하면 이 사람들은 마지막 국감에 자동으로 다시 부르는 걸로, 그것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그것은 아까 시간을 따져 봤는데 오전 중에 이루어졌으면 가능한 일인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약 못 오시는 분이 생기게 되면…… 그런 말은 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게 생기면 마지막 국감 때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종합감사 시 그 많은 단체들을 어떻게 다 소화시키려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단을 하세요.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간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요, 사실 증인과 관련해서는 이 증인은 왜 안 되는지, 저 증인은 왜 되는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이야기가 된다면 저희 야당 위원들도 이것을 수용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합리적인 어떤 수준에서 이것이 결정된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는. 그러니까 넘겨짚는다면 ‘아마 여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비가 들어갔는가 보다, 그 로비에 의해서 막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의해서 증인이 막힌다면 이것은 상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중간에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에 ‘이 부분은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너무 인원수가 많으니까 이것은 줄여 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랄지 이렇게 되지 않고 무조건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다 받아들여지고 하니깐 상당히 그 기준에 있어서 모호하고 그 기준이 좀 정확치 않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야당 위원들이 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낌에는 지금도 안 되는데 나중에 하다 말고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될까 하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용이 되면 아마 끝까지 이 정도에서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시간이 지금 6시 10분 전인데 한 10분이라도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지금 합의된 사람들이 증인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합의 안 된 사람들이 더 증인으로 자격이 있어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합의해 주시고요, 통과시켜 주시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노동부 결산 부분을 끝내야 합니다, 짧게라도. 그러니까 그 중간에 또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 정말 제 말 한번 따라 주십시오. 합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진행하시지요.

○장하나 위원 그런데 너무……

○위원장 신계륜 장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여러분들이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장하나 위원 아니,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된다 지금 그런 수준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 타 상임위도 증인·참고인에 있어서 참여할 경우에 아예 의결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추가 논의할 것이고 14일 날 안 되게 됐으면 이것을 여기서 일부라도 합의하고 가는 것이나 안 하고 가서 사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나 뭐가 낫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두 간사 위원님께서 책임감 가지시려면 이렇게…… 제 것은 한 20% 정도 증인·참고인이 채택이 됐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일단 넘어가면 오히려 협상하시는 데 많은 위원님들의 불만과 부담을 얻으시고 협상을 잘하십니까? 솔직히 반반입니다. 그렇게 신뢰가 다 가지 않고요.

오히려 오늘 이 결과를 미결로 놔둔 채로 협상을 24시간이라도 더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나아가서 지금 이 많은 문제에 관련돼 있는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지

금……

지난 국감으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점점 도가 심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 국감 때는 증인·참고인 가지고 이렇게 곤란을 겪은 기억이 없습니다. 왜 이번에 이렇게 팔다리 다 자른 증인·참고인 가지고 뭘 하라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증인·참고인 아예 채택 안 하고 넘어간 곳은 교문위고요. 역사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증인·참고인 채택이 아예 합의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노위만 이상한 것도 아니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회의 진행은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저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의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차선일 수도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퇴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이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추후에 보완할 테니까 양당 간사님께서 특별히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추가로 증인 선정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의 감사자료가 없이 수질 문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 검증 의결을 요청드렸는데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인데 제10조입니다. 이것은 새누리당 위원들께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자료를 받아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하나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지금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논의를 서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 들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것 하나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신계륜** 상임위 중에도 충분히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성태 위원** 한 위원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충분하게 우리 내부적인 논의를 한번 하자고요.

○**홍영표 위원** 그런데 15일 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상임위도 없잖아요.

○**은수미 위원** 지금 하지 않으면……

○**한명숙 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받지 않으면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런데 문서를 왜 안 내놓는 것입니까?

○**한명숙 위원** 이유가 없지요.

○**홍영표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저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4대강은 이번에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의 전 장관을 우리가 채택했지만 실제로 감사를 했던 이도승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 이분이 지금 대상인데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추가로 증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료만이라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결의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증인……

○**김성태 위원** 우리 한명숙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하게……

○**홍영표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아마 15일 날 4대강에 관련된 국정감사를 할 텐데 그날 안 되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한명숙 위원** 여기서 또 의결이 안 되면 흐지부지돼요.

○**홍영표 위원** 오늘 안 되면 그 사이에 상임위가 열리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동의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 너무 힘드네요. 이것 감사자료 하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홍영표 위원** 당연히 이것 제출해야 되는데.

○**위원장 신계륜** 감사자료도 그렇고, 아까 누구 시라 그랬지요? 국장이라 그러셨나요?

○**한명숙 위원** 이도승 감사국장.

국토해양위에는 그 사람이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좀 의논해 보시고요.

○**한명숙 위원** 환노위가 너무 이렇게 힘이 없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신계륜** 야당 위원장인데 정말 힘이 없군요.

그 문제는 좀 의논하시고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18시00분)

○**위원장 신계륜** 결산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하나 위원님이신데 장하나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고, 주영순 위원님 안 계시고,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명숙 위원** 질의는 해야 되는데 김이 빠져 가지고 질의를…… 질의로 넘어갑니까?

○**위원장 신계륜** 예, 질의로 넘어갔습니다.

○**한명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의결하는 것도 안 도와주면 무슨 일을 앞으로 하라는 건지……

작은 것인데요.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결산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모성보호 육아 지원 문제라 차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모성보호 육아 지원은 어디어디에서 돈이 나가나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저희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또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이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한명숙 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도 나가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일반회계에서는 모성급여에 대해서 고용보험회계에서 돈이 많이 나는 것에 대한 전출금으로 일정 부분 고용보험회계에 전출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2001년도에 모성보호 관련 3법을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하고 남녀고용평등법하고 고용보험법을 당시 개정을 했는데요.

2010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에 어떤 것이 올라갔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일반회계가 2012년에 150억이 올라가고요. 2013년에 250억이 일반회계로 올라가고 2014년에 350억 원이 지금 편성됐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한명숙 위원** 그렇게 편성됐는데, 2010년 11월 예산심사 시에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 실현이 해당 연도 사업예산의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이 지금 61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그것의 50%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3000억 정도가 될 때까지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100%를 매해마다 증액해라 이렇게 부대의견이 올라간 것 혹시 아시는지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들은 바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 부대의견이 올라간 대로 고용노동부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적시한 대로 일반회계에서 2012년도에 150억이 올라갔으면 100%를 올리면 300억이 돼야지요. 그런데 50억 원을 또 까먹고 2014년에는 600억 원이 돼야 되는데 350억 올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저희 부에서도 모성보호 부분 예산은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해보다도 훨씬 전에, 예전에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출산휴가 문제에 대해서 어느 기금에서 돈을 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 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래는 건강보험에서 제일 먼저 맡기로 타깃이 됐었는데 당시 건강보험의 사정이 정말 안 좋아서 이렇게 됐는데……

○**한명숙 위원**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다 가니까, 그 과정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일단 제 얘기는 부대의견이 달린 대로 고용노동부가 실행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것을 실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올해도 사실은, 제가 특히 차관으로서 이 모성보호 예산을 당장은 완전히 뺄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일반회계로

빼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은 안 됐습니다만 전출금 100억을 올해 조금 더 뺐다고 하는 게 공이라면 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일반회계 부담을 계속 높여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일단 부대의견대로 노동부가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면 지금 모성보호 육아 지원사업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지금 지원을 거의 안 해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면 단축한 근로시간만큼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통상금액의 40%를 지급하는 급여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의 계획액을 보면 78억 정도, 그중에 61억 정도를 자체 변경을 통해서 감액했어요. 그리고 계획현액은 17억 6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7억 정도를 집행하고 불용액이 거의 9억 7000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해 가지고 감액한 금액 속에서도 절반도 실행을 못 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문제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도무지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그래서 그 원인을 바꿔야 되거든요. 변화시켜야 되는데, 혹시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글썽, 그것은 좀 더 세심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1년 10월부터 이 제도가 처음 시작이 돼서 이제 겨우 한 2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라서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데다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신청 자체를 하기 쉽지 않고 사업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가 때문에 근로자들이 스스로 알고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까다로운 조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육아휴직 급여는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이것은 근로시간 단축이잖아요, 육아기 동안에. 그래서 일정 정도의 시간제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것을 신청하지 않거나, 선전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한다면 지금 노동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새로 자꾸 만들려고 생각하는, 물론 만들어도 좋지만 만드는 것보다도 이미 현재 있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

지금 있는 것은 이렇게 그냥 내팽개치고 그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만 자꾸 만든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를 동시에 같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께, 자영업자전직 지원사업 또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창업을 한다든지 전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컨설팅하는 것이랄지 또는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전직사업은 불용액이 96.4%이고요, 능력개발사업은 불용액이 88.1%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못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홍보를 안 하는 것인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사실은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 임의가입 제도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한명숙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임금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고용 안정이라든지 직업훈련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이 너무 많아

서……

○**한명숙 위원** 거의 불용이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정책 대상의 수요하고, 지원제도가 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들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자영업자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다른 훈련들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매출액이 8000만 원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훈련비의 20~50%를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셔서 정말 타 훈련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전직훈련이나 능력개발에도 일정 정도 이하일 때는 훈련비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한다면, 불용액이 96%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그냥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연구하셔서 가지고 그것을 잘 맞춰서 훈련비를 감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미 그런 쪽으로 지금 제도를, 자영업자 부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 하셨습니까?

○**한명숙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십니까?

○**한명숙 위원** 이게 뭐 맥이 빠져 가지고……

○**위원장 신계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봉홍 위원 질의합니다.

○**최봉홍 위원** 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전체 재원 규모가 21조 7100억입니다. 사용한 금액이 85.57%이고 15%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내역을 보면 불용액,

전용액, 예산 세울 때하고 시행한 것이 상당히 많이 착오가 납니다.

부서에서 이번에 이 자료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것인데 그 사건을 일으킨 분들한테 안에서 시말서나 좀 받으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의욕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봉홍 위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벌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올해부터는 불용 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봉홍 위원** 한수원 잘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최봉홍 위원** 노동부 안에도 공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다산 정약용이 가장 으뜸가는 임무를 절약이라 했다 했는데 저는 절약보다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전 분야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이 계십니까?

은수미 위원님!

그다음에 서용교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용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은수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주당 은수미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명 두리누리사업이지요. ‘두리누리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 두리누리사업이 EITC하고 다른 것은 소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장관님이나 지금 저기 참석하신 고용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두리누리사업이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끌어들이는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시면, 잘 안 나오는데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순수하게 끌어들이는 것이 총, 그러니까 ‘가입자 소급’ 그다음에 ‘사업장 소급’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합쳐 보니까 2012년 7월에서 12월까지 총 3.2%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가입자한테 지원을 해 준 것, 결국 소득보장을 해 준 셈이 됐는데요. 거기가 67.9%, 그다음에 기존 사업장에서 채용을 하거나 창업을 한 경우, 그러니까 신규로 채용하거나 창업을 한 경우가 나머집니다.

결국 이 결과를 보면 두리누리사업이 사각지대 해소라기보다는 꼭 소득보장 정책처럼 운영됐고, 사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겠습니다.

지금 원래 목적이……

○**은수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 고용부장관님께서 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것과 똑같은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은수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담당자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존 미가입자를 끌어들이지 못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속도가 늦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로 볼 때는 예전에는 기존 가입자가 더 많았습니다마는, 옛날에 7 대 3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봤는데 점점……

○**은수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 7 대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0% 중에 그 상당수가 신규창업이나 신규채용까지를 포함한 30%다, 실제로 그것을 빼 버리면 그때도 2~3%대였습니다. 다시 여쭙 보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신규 창업이나 채용은 그게 사각지대 해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존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을 두리누리사업을 했더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더 가입됐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그렇지요.

○**은수미 위원** 이것은 지금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여쭙어 보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그게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정책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가 1년 지난 다음에 지난번에 KDI랑 관련 학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추세적으로 보면……

○**은수미 위원** 몇 %가 추세적으로 올랐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저희들이 그때 통계로 접하기로는 지금은 한 반반 정도……

○**은수미 위원** 반반이라는 게 몇 %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아니, 정확……

○**은수미 위원** 기존 미가입자 중에 가입한 사업장, 가입자, 제가 총합 3.2% 제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고용부 자료입니다. 자료를 다시 본 거예요.

저것보다 많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아니, 저 자료는 저희들이 내 본 자료가 아니어서 그런데, 좌우간 저희들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은수미 위원** 아니요, 다시 묻겠습니다.

기존 미가입자 중에 가입된 퍼센티지 몇 %입니까?

제가 지난번 국회 때도 그것을 확실히 여쭙어 봤어요.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수치가 적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두루누리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만 그 효과가 EITC와 달리 사각지대 해소여야 된다, 그것이 원래의 정책목표고 국민세금이 거기에 쓰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수치가 안 나오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그게 수치를 분석해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는 학자들만 해도 같은……

○**은수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아니, 학자……

○**은수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좀 답변을……

○**은수미 위원** 제가 이거 국정감사 때 다시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루누리사업의 목표는 소득보장은 후순위에요. 지금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전체 한 40%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이겠다고 세금을 쓰는 겁니다. 그 효과 확실히 규명을 하시고요, 효과가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1년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쭙어 보겠습니다.

장관계서 취업사에도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강화하고 상향 이동이 가능한 꿈이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 이게 취업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몇 개월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취업사를 얼마나 이행했느냐 이런 것까지는 여쭙어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효과는 또한 혹은 취업사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텐데, 제가 취업사와 달리, 고용부에서 취업사에 해당되는 정책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취업훈련, 복지를 연계시키는 주요한 정책이 취업성공패키지고요, 저도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혹은 이것을 모델로 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한국형 실업구조라는 형태로.

그런데 저의 고민은 이 취업성공패키지의 효과입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기보다 미흡해요.

취업성공패키지가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14만 명이 참여했는데 취업률은 31%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자 10명 중 3명이 취업했어요. 그리고 취업한 사람 중 1년 이상 그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이 대충 20~30%입니다.

그러면 참여한 사람 중에 취업하고 1년 이상 유지한 사람까지를 계산해 보면 이게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아지지요. 거기에다가 취업자 중에 딱 7%만이 150만 원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취업성공패키지의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해 온 것에 보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전문가들이 많이 대고 있는

게 우선 상담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상담인력 1명당 지금 300명 정도씩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 그다음에 공공고용서비스 대신에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 이게 고용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냐냐 이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7%만이 150만 원 이상 일자리에 있는 것이 고용부가 최근 주장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심지어는 이 시간제 일자리가, 제가 직접 봤습니다. 1일 5시간짜리 시간제 일자리를 아예 쪼개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2.5시간으로 쪼개서 주 15시간 미만이 되게 해 가지고 온갖 노동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고용부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경북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고용률을 올리겠노라, 이렇게 일자리가 나빠지다 보니까 취업을 시키려고 그래도 150만 원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요인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취업성공패키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한계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취업성공사업은 패키지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면서 자기가 시장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취업역량이 제고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취업패 I도 그렇고 II도 그렇고 우리가 서비스하는 이분들이 굉장히 취약계층 아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취업률만 가지고, 이 취업성공패키지 이것을 100% 취업률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취업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쪽에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은수미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 취업성공패키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상담인력도 늘리고 민간위탁도 이제 조금, 우리 고용부가

직접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기관의 질도 올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개선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 사업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조금 더 질 좋은 일자리로 우리 취약계층이 취업해서 정말 중소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장관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요, 그렇게 고용률에 목을 때는 지금 정부가 저소득층의 취업률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관되지 않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고용률에……

○은수미 위원 고용률에 목 매달 때는 다르고 취업률에 또……

그러면 저소득층은 취업률에는 별로 상관을 안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상관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종목적은 취업을 시키는 것인데 이분들이 여러 다양한 계층이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은수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취업률보다는 사실 어떤 일자리에 가시는 가입입니다. 그런데 150만 원 이상 일자리에 못 가세요. 100만 원 이상 일자리에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요즈음 쪼개기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일자리 쪼개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고용부에서 점오 일자리 좀 규제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1분만……

○은수미 위원 점오 일자리가 뭐냐 하면 요즈음 노동시장에 2.5, 3.5, 4.5, 7.5 시간제 일자리, 이게 시간제 일자리라고 합니다.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오 일자리를 왜 기업들이 하게 되느냐 하면 주15시간 이하니까 퇴직금, 시간외수당, 온갖 것을 다 안 줘도 되거든요. 이것을 지금 공공 부문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직접 조사 좀 하십시오.

제가 이 점오 일자리도 현장에서 직접 봤고요, 7.5 일자리도 있더라고요.

7.5 일자리는 또 뭐냐 하면 30분 이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1일 8시간이 아니라 1일 7.5, 시간

제니까 시간제로 혜택도 받고 그다음에 30분 안 쉼도 되고, 심지어 1일 8시간이 아니면 휴게시간 1시간 안 쉼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현장에 널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 정말 저소득층이 팬찮은 일자리로 상향이동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조사하십시오.

이것도 제가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실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朱永順 委員 새누리당 주영순 위원입니다.

공무원님들 너무 지금 지루하실 것인데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사업실적, 그중에서도 신규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예산만 약 27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불용액이 무려 750억이나 됐습니다.

불용액 모두 보험료 지원액에서 발생하는 것이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朱永順 委員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신규사업 실적이 계획보다 너무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당초 81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3만 명에 그쳤고 또 국민연금의 경우는 65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21만 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장관님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규가입자를 확대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규가입자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대로 제도 설계해서 시작하는데 시작 자체가 상당히 늦어진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 기업 차원에서도, 우리가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회보험료,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지원해 준다 그래도 건강보험이라든지 다른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또 자기 소득이 노출되는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접근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제도의 요건이라든지 또 관련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됐습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신규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부담이 저임금근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최저임금 104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아도 월 5만 6000원 정도의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10인 미만엔 130만 원 미만……

○朱永順 委員 그렇지요? 지원 대상 기업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상당수 저임금근로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형평성에 아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신규가입자를 확대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신규가입 촉진을 위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건의 질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한명숙 위원님, 그다음에 김성태 위원님, 서용교 위원님, 주영순 위원님 남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동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친 결산에 대해 보다 상세한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예결소위원회의 홍영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주영순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한국고용정보원장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 사 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한국잡월드이사장

정철균
 문형남
 박종구
 이기권
 장의성

○출석 위원(13)

| | | | |
|-------|-------|-------|-------|
| 김 경 협 | 김 성 태 | 서 용 교 | 신 계 루 |
| 심 상 정 | 은 수 미 | 이 완 영 | 이 종 훈 |
| 장 하 나 | 주 영 순 | 최 봉 홍 | 한 명 숙 |
| 홍 영 표 | | | |

○청가 위원(2)

김 상 민 한 정 애

○출석 전문위원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한 공 식 |
| 전 문 위 원 | 김 양 건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 | |
|---------------------------|-------------|
| 장 관 | 방 하 남 |
| 차 관 | 정 현 옥 |
| 기 획 조 정 실 장 | 심 경 우 |
| 고 용 정 책 실 장 | 이 재 홍 |
| 노 동 정 책 실 장 | 권 영 순 |
| 노 동 시 장 정 책 관 | 임 서 정 |
| 직 업 능 령 정 책 관 | 나 영 돈 |
| 고 용 서 비 스 정 책 관 | 황 보 국 |
| 인 령 수 급 정 책 국 장 | 신 기 창 |
| 고 령 사 회 인 령 심 의 관 | 이 수 영 |
| 근 로 개 선 정 책 관 | 임 무 송 |
| 노 사 협 령 정 책 관 | 박 화 진 |
| 공 공 노 사 정 책 관 | 송 문 현 |
| 산 재 예 방 보 상 정 책 국 장 | 박 중 길 |
| 국 제 협 령 관 | 최 기 동 |
| 대 변 인 | 박 성 희 |
| 감 사 관 | 조 철 호 |
| 경 제 사 회 발 전 노 사 정 의 위 원 장 | 김 대 환 |
| 중 앙 노 동 위 원 장 | 박 길 상 |
| 근 로 복 지 공 단 이사장 | 이 재 갑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 송 영 중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사 장 | 백 현 기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 이 성 규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김 재 구 |